

1. 지방조직 운영규정 개정

현행	개정	비고
<p>제 51 조 【수습대표】 ① 지방본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 조합원 중에서 수습대표를 위촉하고, 지부대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p> <p>② 지방본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수습대표위원을 파견하여야 한다.</p> <p>③ 수습대표는 지방본부위원장의 위임 사항 등을 완료한 후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수습대표는 대표위원 1 인과 위원 2 인으로 구성한다.</p> <p>⑤ 수습대표의 운영은 규약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본 규정에 준한다.</p>	<p>제 51 조 【수습대표】 ① <u>선거관리규정 제 37 조 ①항 각호 이외의 사유로 지부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u> 지방본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 조합원 중에서 수습대표를 위촉하고, 지부대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p> <p>② 지방본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수습대표위원을 파견하여야 한다.</p> <p>③ 수습대표는 지방본부위원장의 위임 사항 등을 완료한 후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수습대표는 대표위원 1 인과 위원 2 인으로 구성한다.</p> <p><u>단, 지방본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수를 10 인이내에서 증원할 수 있다.</u></p> <p>⑤ 수습대표의 운영은 규약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본 규정에 준한다.</p>	<p>수습대표의 정의 및 내용 보완</p>

부칙 (2014.1.20)

제 1 조 본 규정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상벌규정 개정

현행	개정	비고
제 9 조 【징계의 시효】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 9 조 【징계의 시효】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단, <u>공금횡령, 공금유용, 기타 회계상 부정, 뇌물 및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이를 3년으로 한다.</u>	징계시효 현실화 적용

부칙 (2014.1.20)

제 1 조 본 규정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시행일 이후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적용된다.

제 3 조 본 규정의 미비한 점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별표 1>

징 계 기 준

징계사유	요구기준			비고
	제명	정권	정직	
1. 조합간부				
1) 무단결근	월 10 일	월 5 일	월 3 일 이상	
2) 지참 및 무단조퇴			월 5 일 이상	
3) 직무유기		고의	과실	
4) 직무상 비밀누설	고의	고의		
5) 공금횡령	고의	고의		
6) 공금유용	고의	고의	과실	
7) 기타 회계상 부정	고의	고의	과실	
8) 뇌물전달		고의	과실	
9) 뇌물 및 금품수수		고의	과실	
10) 직무상 기만행위	2 회 이상	2 회 이상		
11) 문서의 위조, 변조, 손괴 및 행사	고의	고의		
12) 허위보고		고의	과실	
13) 지시사항 위반		고의	과실	
2. 공통부문				
1) 각급회의 시 회의진행 방해행동	고의	고의		
2) 조합비방 발언행위	고의	고의		
3) 조직질서 문란행위	고의	고의	과실	
4) 유언비어 행위		고의		
5) 조합원 상호간 이간행위		고의	과실	
6) 대외기관 투서행위	고의	고의	과실	
7) 회의참석 방해행위		고의	과실	
8)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행위		고의	과실	
9) 선거에 대한 개입 및 자유의사를 흐리게 하는 행위		고의	과실	
10) 각종선거시 부정투표를 감행 또는 선동하는 행위	고의	고의		
11)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고의	고의	과실	
12) 선전 및 공고문 손상행위		고의	과실	
13) 조합재산의 망실 또는 파손	고의	고의	과실	
14) 조합의 공신력이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고의	과실	
15) 직명 사칭	2 회 이상	2 회 이상	1 회	
16) 폭력, 폭행, 협박, 납치 행위 등	고의	고의		
17) 뇌물 및 금품수수		고의	과실	
18) 기타 위법 및 부당행위		고의	과실	

3. 여비규정 개정

현행	개정	비고
제 7 조 【각종 회의 시 여비지급】 전국대의원대회, 지방본부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지부장회의 시는 제 2 조 제 1, 2 호를 지급하며 숙식의 경우 중앙본부 또는 지방본부에서 일괄 처리토록 한다.	제 7 조 【각종 회의 시 여비지급】 전국대의원대회, 지방본부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u>중앙상무집행위원회, 산하조직 대표자회의</u> 시는 제 2 조 제 1, 2 호를 지급하며 숙식의 경우 중앙본부 또는 지방본부에서 일괄 처리토록 한다.	명칭 정정

부칙 (2014.1.20)

제 1 조 본 규정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회계규정 개정

현행	개정	비고
<p>제 30 조 【예산성립 및 지출】 ①기성립된 예산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지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p>16. 회의비는 회의에 따른 비용(중앙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 지방본부위원장회의, 실.국장회의)으로서 여비 등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경비로 지출한다.<일부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 하 략 -</p>	<p>제 30 조 【예산성립 및 지출】 ①기성립된 예산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지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p>16. 회의비는 회의에 따른 비용(중앙위원회, <u>중앙상무집행위원회, 산하조직대표자회의</u>, 실.국장회의)으로서 여비 등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경비로 지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하 략 -</p>	<p>명칭정정 및 <일부삭제> 삭제</p>
<p>(서식 제 3-8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월별수입 및 기출내역(중앙, 지방본부비)</p>	<p>(서식 제 3-8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월별수입 및 <u>지출내역</u>(중앙, 지방본부비)</p>	<p>문구 정정</p>

부칙 (2014.1.20)

제 1 조 본 규정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 처무규정 개정

현행	개정	비고
<p>제 4 조 【부서의 소관업무】 각 부서(국)의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 중 략 -</p> <p>9. 조직 1 국</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조직처 제반 행정업무 총괄</p> <p>- 하 략 -</p>	<p>제 4 조 【부서의 소관업무】 각 부서(국)의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 중 략 -</p> <p>9. 조직 1 국</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조직실</u> 제반 행정업무 총괄</p> <p>- 하 략 -</p>	명칭변경
<p>제 9 조 【분류기호】 문서의 분류기호는 조직기호와 문서분류</p> <p>- 중 략 -</p> <p>= 인비(비밀문서)</p> <p style="padding-left: 40px;">(본 부) (비) 지원 제 00 호</p> <p>- 중 략 -</p> <p>= 전연통신문</p> <p style="padding-left: 40px;">(본 부) 전통 제 00 호</p> <p>- 하 략 -</p>	<p>제 9 조 【분류기호】 문서의 분류기호는 조직기호와 문서분류</p> <p>- 중 략 -</p> <p>= 인비(비밀문서)</p> <p style="padding-left: 40px;"><u>(중앙본부)</u> (비) 지원 제 00 호</p> <p>- 중 략 -</p> <p>= 전연통신문</p> <p style="padding-left: 40px;"><u>(중앙본부)</u> 전통 제 00 호</p> <p>- 하 략 -</p>	명칭변경
<p>제 65 조 【구비서류 및 직원승진】 ①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청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p> <p>1. 주민등록초본 또는 호적등본 1 통</p> <p>- 하 략 -</p>	<p>제 65 조 【구비서류 및 직원승진】 ①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청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p> <p>1. 주민등록초본 또는 <u>가족관계증명서</u> 1 통</p> <p>- 하 략 -</p>	호적법 페이지에 따른 변경

부칙 (2014.1.20)

제 1 조 본 규정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